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

의안 번호 2013 ~ 55

제출연월일	2013. 6. 28.			
제 출 자	거창군수			

1. 제정이유

○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에 필요한 사항,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군민 복리 향상은 물론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(안 제3조)
- 나.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에 관하여 정함(안 제4조)
- 다.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에 관하여 정함(안 제5조 ~ 제9조)
- 다. 공공건물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하여 정함(안 제10조)
- 라. 신·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관하여 정함(안 제12조)
- 마. 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함(안 제13조)
- 바.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하여 정함(안 제14조)
- 아. 에너지절약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함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- (1)「에너지법」제4조,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제3조, 제8조
- (2)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제5조, 제54조
- (3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24조, 제25조
- 나. 예산조치 : 356백만원('13년도 본예산 156백만원, 추경 200백만원)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3. 5. 14. ~ 6. 03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(4) 비용추계서 : 붙임

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에너지법」 및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신·재생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에너지자립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에너지법」제2조 및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2조,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제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패시브 하우스"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.
 - 2. "액티브 하우스"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수동적(passive)인 패시브 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(active)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 - 3. "제로에너지 하우스"란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- 제3조(기본방향)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
 - 2. 산업·환경·교통·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
 - 3. 지속가능하고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
 - 4. 신·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
 - 5.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군민의 협력 유도
 - 6.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군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
 - 7.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

- 제4조(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 수립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(이하 "에너지자립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으로 수립·추진하여야 하고,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1.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
 - 2.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
 - 3. 신·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
 - 4.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
 - 5. 녹색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
 - 6. 신·재생에너지 시설의 이용 및 보급 지원
 - 7.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
 - 8. 그 밖에 에너지자립계획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군수는 제1항의 에너지자립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자립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④ 군수는 제1항의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한 후, 이를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.
 - ⑤ 군수는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군 공보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5조(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설치)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제3호에 관한 사항은 「거창군 건축조례」에 따른 거창군 건축위원회(이하 "건축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 - 1.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계획 및 시책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- 3. 녹색건축물 지원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

- 4. 그 밖에 에너지관련 중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 -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,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- 1. 군 의회 의원
 - 2. 에너지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협회 관계자
 - 3. 군민 또는 지역주민단체 관계자
 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-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,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- 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번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위원의 수당)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0조(분야별 에너지 시책) ① 군수는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.
 - 1.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
 - 2.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제품, 환경표시 인증제품의 사용
 - 3. 신·재생에너지 이용·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
 - 4.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
 - 5.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
 - ③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.
 - 1. 건축물을 신축·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시공 권장
 - 2.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 권장
 - 3. 공사 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게 녹색건축물에 대한 교육 실시,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지침 발간·배포
 - ④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.
 - 1. 도시 및 교통, 각종 건설 계획 등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
 - 2. 주차 수요관리 강화 및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 억제
 - 3.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 마련
 - 4.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
- 제11조(비전선언 등) ①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지가 포함된 에너지자립도시 비전선언(이하 "비전선언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으며, 군·군민·지역주민단체·사업자·에너지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실천협약(이하 "실천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비전선언과 실천협약에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목표, 군과 군민·지역주민단체·사업자·에너지관련기관 등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내용을

포함한다.

- ③ 각 읍·면은 주민조직 대표, 직능단체 대표, 주민, 공공시설의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비전선언과 실천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.
- 제12조(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 ① 군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 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라 생산하는 신·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정부의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.
 - ③ 군수는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군수는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, 임대요율은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3조(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)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고, 적용대상 건축물은 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상가주택(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)으로 다음 각호 행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신·재생에너지 등 설치(신축인 경우 포함)
 - 2.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·증축·개축·용도변경·대수선·수선(창호· 단열재·설비교체 등)
 - 3. 전기·조명시스템 등으로 변경(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, LED, 일괄 소등 스위치 등)
 - 4. 폐열회수설비(열교환장치, 히트펌프 등) 설치
 - 5.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(고효율 인버터,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) 설치
 - 6. 냉·난방 효율 향상 공사(고효율보일러, 냉·난방기기 등)
 - 7. 수변전 설비(고효율 변압기)
 - 8.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군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

건축주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나 공기업,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

- 제14조(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) ① 군수는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
 - 2. 기존 및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(패시브하우스, 액티브하우스, 제로에너지 하우스. 생태건축물 단지 등)로 전환하거나 조성하는 사업
 - 3.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「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사업
 - 4.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」제11조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) 군수는 제13조·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연 2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제16조(에너지절약활동 등에 대한 지원)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, 에너지 절약문화 및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을 위한 군민, 지역주민단체,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7조(유공자 표창) 군수는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에 공적이 큰 군민, 사업자, 지역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- 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

- O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계획 수립
- O 녹색건축물 구역 지정에 따른 일부 사업비 지원
- O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

나. 관련 조문

- O 제9조(에너지 자립도시 계획) ③ 군수는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O 제12조(건물부문)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 중 일부 사업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23조(재정지원 등)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	분	1차년도 (2013년)	2차년도 (2014년)	3차년도 (2015년)	4차년도 (2016년)	5차년도 (2017년)	합계
총비용	3-(a - b)	356	386	386	386	386	1,900
	도 비	52	52	52	52	52	260
세출	군 비	304	334	334	334	334	1,640
	소계(a)	356	386	386	386	386	1,900
세입							
	소계(b)						

3. 관련 의견

O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부분 협력과 수요증가로 추계 보다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

Ⅱ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- O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: 20,000천원 정도
-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매년 70개소 * 4,972천원 * 15% = 156,618천원
- 녹색건축물 지원 2,120,000원/m² * 82.5m² * 8개소 * 15% = 209,880천원 (1개소당 26,235천원 정도)
- O 에너지 절약 민간 홍보 및 교육 사업: 20,000천원

작성자:경제과 양호일